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	-----

제출년월일 : 2005. 11. 1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점용료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차
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이를 조례에
산입하며, 우리구의 지역실정과 시장특성에 맞게 환경개선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점용료 관련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함.

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신설

-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거리
개 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조례 제4319호(2005. 9. 30.)]
- 2)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제2항
- 3)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2005. 3. 1.)
- 4) 도시관리과-7156(2005. 6. 7.)호와 관련임.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다. 기 타

- 1)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2005. 10. 26. ~ 2005. 11. 15.) 결과 : 의견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점용 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중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중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2항중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제1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1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동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5.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제7조 제2항제3호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1항중 “기한내에”를 “납부기한내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제3항중 “연8퍼센트의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를 제12조로 하며,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2항중 “100분의 30”을 “다음 각호”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내지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준용규정)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0.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1년	토지가격에 을 곱한 금액 0.0001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m'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을
	주택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5를
	기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p> <p>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u>별표</u>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26조의4 <u>별표 3</u>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6조 (점용료 등의 조정)</p> <p>①----- -----<u>별표1</u>-----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생략)</p> <p>1~2. (생략)</p> <p>3. 제1항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u>별표</u>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3. (생략)</p>	<p>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u>각</u></p> <p><u>호의 1</u>----- ----- 1~4. (현행과 같음)</p> <p><u>5.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u></p> <p>②(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건설교통부령</u>----- -----</p> <p><u>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u></p> <p>③----- -----<u>별표 1</u>----- ----- -----</p> <p>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u>기한내</u>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채납처분할 수 있다.</p>	<p>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u>납부기한내</u>-----</p> <p>-----</p> <p>-----</p> <p>-----</p> <p>-----</p> <p><삭제></p>
<p>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②(생략)</p> <p>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p>
<p><신설></p>	<p>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신설> 제11조 (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0조 (수수료의 징수)</p> <p>①법 제40조의 규저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구청장이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의 수입으로 한다.</p>	<p>제12조 (수수료의 징수)</p> <p>①----- -----<u>건설교통부령</u>-----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의 수입으로 한다.</p>
<p>제11조 (세입 및 징수교부금)</p> <p>①(생략)</p> <p>②구청장은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u>100분의 30</u>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교부받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 <신설></p> <p>③(생략)</p>	<p>제13조 (세입 및 징수교부금)</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호</u>----- -----</p> <p>1. 점용료의 경우 <u>100분의 50</u></p> <p>2. 변상금의 경우 <u>100분의 40</u></p> <p>③(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1]</p> <p>[별표 2]</p>

[별표 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제3조와 관련)

현행					개정안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료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제1~9호 (생략)					제1~9호 (현행과 같음)				
<신설>					10.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사 일이 필요하다고 지정·공 고·고시한 제9호의 외곽·주 양시설·비가리개 시설·1㎡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외 곽작물·물 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점용 면적 1㎡	1년	농업 및 식물 재배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 이하 50,000원, 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2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 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4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 치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1의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 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 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 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제3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 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 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 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제4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